#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2009구합52295]



# 【전문】

### 【원 고】

【피 고】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변론종결】2010. 8. 20.

## 【주문】

#### 1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안보수사 5팀 팀원(5급)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다.
-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수행하던 중 소외 1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동거하면서 일본 내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소외 1에게 내연녀가 있으니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엄수의무(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유]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안보수사 5팀 팀원(5급)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다.
-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수행하던 중 소외 1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동거하면서 일본 내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소외 1에게 내연녀가 있으니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엄수의무(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유]

#### 1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안보수사 5팀 팀원(5급)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다.
-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수행하던 중 소외 1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동거하면서 일본 내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소외 1에게 내연녀가 있으니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피고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엄수의무(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